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유은혜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재 타 공무원의 경우 차질 없는 인력 수급을 위해 추가 합격 제도를 두고 있으나, 교원 임용시험에는 추가 합격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임용 포기나 결격 사유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. 교원 임용시험 일반 모집의 경우 최근 3개년 평균 약 80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채용 절차로 인한 행정 낭비를 유발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저해할 수 있음.

이에 교원 임용시험에도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둌으로써 결원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교원 수급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추가 합격 제도의 도입(안 제11조제3항 신설)

- 1) 결원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정원 범위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서 결원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원 범위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공개전형의 방법등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1조(공개전형의 방법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서 결원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원 범위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.</u>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481